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안내문

※ 상기 내용은 청약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며, 청약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거나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청약일정 및 당첨자 발표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당첨자 및 등·호수 발표 | 당첨자 및 등·호수 발표 결과 확인 방법 |
|-----------------|--|----------------------------------|---|
| 2022. 07. 18(월)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인터넷 청약 (www.applyhome.co.kr) (09:00 ~ 17:30) | 당첨자 및 등호수 발표일 2022. 07. 28(목)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청약홈 앱 개별조회 (청약홈 로그인 후 조회가능) |

※ 특별공급 신청은 인터넷 청약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반드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 인증서를 발급받아 해당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인터넷청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급 세대수

| 구분 | 59A | 75A | 75B | 84A | 84B | 계 |
|------------|-----|-----|-----|-----|-----|----|
| 다자녀 가구특별공급 | - | 8 | 6 | 5 | 6 | 25 |

■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대상 및 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모집공고일 현재 부산시에 거주하거나 울산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형 자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제3항)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지역(부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또한,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주택임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배점기준

| 평점요소 | 총 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① 미성년 자녀 수 | 40점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 ② 영유아 자녀 수 | 15점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
| |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 ③ 세대 구성 | 5점 | 3세대 이상 | 5 |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 | 한부모 가족 | 5 | |
| ④ 무주택 기간 | 20점 | 10년 이상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⑤ 해당 시·도 거주기간 | 15점 | 10년 이상 | 15 |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하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인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⑥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5점 | 10년 이상 | 5 | •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 계 | 100점 | | | |